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43호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의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임실군의회의장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장종민 의원 대표발의)

1. 수정이유

가. 임시거처지원금에 대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자를 구체화함

2. 주요내용

가. 임시거처지원금 지급 근거 및 지급 대상 구체화

- 임시거처지원금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
- 임시거처지원금을 임시거처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급.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년 10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조례안: 붙임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시거처지원금

가. 임시거처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고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한다.

나. 임시거처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 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① 피해지원금 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생 략) 2. 임시거처지원금 가.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u>다만, 임시거처지원금은 실비로 지급한다.</u> 나. 지원기간: 임시거처 임차일부터 최대 6개월	제5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임시거처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고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 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한다. 나. 임시거처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 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화재피해 주민 지원금

나.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제5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제7조(지원 결정)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사업비: 105백만원
- 지원대상: 화재피해를 입은 임실군민
- 지원내용
 - 피해지원금: 75백만원

구분	화재피해면적 70% 이상	화재피해면적 30% 이상 70% 미만	화재피해면적 10% 이상 30% 미만
지원 금액	5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 임시거처지원금: 30백만원
 - 지원금액: 최대 3백만원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이내

나. 추계 결과

- 2025년~2029년: 105백만원×5년=525백만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참조

3. 재원조달방안

- 총 소요예산: 525백만원(군비 525백만원)

4. 작성자

- 장종민 의원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군 비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세 출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피해지원금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75,000
임시거처지원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군 비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